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지역내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실종자·가출인 수색 및 교통사고 발생 등에 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대원의 사기진작 도모

2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확대(안 제5조)

- 방범대원 출동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, 제7조 및 제18조
나. 예산조치 : 14,400천원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7876(2018. 10. 5.)〕
라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49(2018. 10. 4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〔예고기간 : 2018. 12. 21. ~ 2019. 1. 9.(20일간)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방범대원 출동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 등) ①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 4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제5조(지원 등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방범대원 출동비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